# 배임수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[(피고인1·3·4에대하여인정된죄명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·업



# 무상횡령·배상명령

[부산지방법원 2017. 2. 10. 2016고합12, 2016고합219(병합), 2016초기166]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박영식, 임관혁(기소), 구민기(공판)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 정인외 3인

【배상신청인】

【배상신청대리인】 변호사 최순용

## 【주문】

1

(변경 전 상호 ○○○△△△△□□□□□□□ 주식회사)

- 1.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1,150,000,000원에,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600,000,000원에,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,100,000,000원에, 피고인 4를 징역 1년 9월 및 벌금 1,100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- 2. 피고인 1, 피고인 3,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,300,000원을, 피고인 3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2,200,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- 3. 다만, 피고인 3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4.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20시간의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.
- 5. 피고인 1로부터 266,413,821원을 추징한다.
- 6.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- 7.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.

### 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]

[이유]

]

[이유]

]